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12조제1항의 기록·보존 의무를 삭제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요건과의 정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지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보고”를 “제출”로 정비하며, 제12조의6제1항 중 인용 조문 오류를 실제 오염도 검사 결과 규정에 맞게 정정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 신설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안 제12조제1항, 제12조의6제1항 및 제16조제3항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의6제1항 중 “제13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른 보고 및”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으로,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보존”을 각각 “보존·제출”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 ----- ----- ----- ----- <u>환경부장관에게 보고</u> <u>하여야 한다.</u> ----- ----- ----- -----.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 ----- ----- ----- ----- <u>10년 동안 기록·보</u> <u>존하여야 하며, 기후</u> <u>에너지환경부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기</u> <u>후에너지환경부장관</u> <u>에게 제출하여야 한</u> <u>다.</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의6(실내공기질	제12조의6(실내공기질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u>실내공기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u>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그 밖에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u>-----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현행과 같음)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u>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u>-----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
--	--	---

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을 측정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 7의3. (생
략)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
기질 측정을 하
지 아니한 자 또
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의2. ~ 10. (생
략)

④ (생략)

을 측정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 -----

-----.

1. ~ 7의3. (현행과
같음)

8. -----

--보존·제출-----

보존·제출-----
8의2. ~ 10. (현행
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20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강득구 · 박선원 · 이병진
한병도 · 이학영 · 송재봉
정일영 · 조계원 · 채현일
김주영 · 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6제1항).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제12조제1항의 기록·보존 의무를 삭제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요건과의 정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지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보고”를 “제출”로 수정함(안 제12조제1항)

나. 제12조의6제1항 중 인용 조문 오류를 실제 오염도 검사 결과 규정에 맞게 정정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 신설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안 제12조의6제1항 및 제16조제3항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실내공기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를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보존”을 각각 “보존·제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 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자료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 고 그 결과를 <u>10년 동안 기록</u> <u>· 보존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 ----- ----- ----- -----10년 동안 기록 · <u>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 환</u> <u>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u> <u>출하여야 한다.</u> ----- ----- -----.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u>실내공기</u> <u>질의 종합적·체계적</u> 관리를 <u>위하여</u>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 다.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u>제12조에</u> <u>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1</u> <u>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u> <u>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u> <u>밖에</u> <u>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u> <u>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u> <u>근할 수 있도록</u> -----

②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3. (생 략)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 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 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의2. ~ 10. (생 략) ④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의3. (현행과 같음) 8. ----- -----보 <u>존·제출</u>----- -----<u>보존·제출</u>--- --- 8의2.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